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99호서식] <개정 2021. 10. 28.> (앞쪽)

관리번호	

*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.

(국 외) 파 생 상 품 거 래 명 세 서
(금융투자업자 제출용)

① 대상기간	년 분 기

② 금융투자업자명 (제출의무자)		③ 사업자등록번호	– –	④ 주소 (본점소재지)	
⑤ 성 명 (납세의무자)		⑥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–	⑦ 주소 (거소)		⑧ 계좌번호	

종목								거래내역					
⑨ 기초자산	⑩ 시장	⑪ 상품	⑫ 선물/옵션	⑬ 결제월	⑭ 행사가격	⑮ 거래승수	⑯ 통화명	⑰ 거래일자	⑱ 매도/매수유형	⑲ 약정수량	⑳ 약정가격	㉑ 약정금액	㉒ 수수료 등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생상품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○증권 대표이사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 : (국외)파생상품거래명세서(금융투자업자제출용-연간)[별지 제99호의3 서식](4분기 제출 시에만 제출)

297㎜×210㎜(백상지 80g/㎡)

작 성 방 법

1.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.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.
2.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3. ⑤란부터 ⑧란까지에는 대상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4. ⑨ 기초자산란: 국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(예시: S&P500, NIKKEI225 등).
5. ⑩ 시장란: 국외파생상품이 거래 또는 상장된 시장의 명칭을 적습니다(예시: CME, EUREX 등).
6. ⑪ 상품란: 국외파생상품의 명칭을 적습니다.
7. ⑫ 선물/옵션란: 선물, 콜옵션, 풋옵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(EUREX연계거래와 FX마진거래는 선물로 기재).
8. ⑬ 결제월란: 국외파생상품 결제월의 연도 4자리, 월 2자리를 적습니다(예시: 2016년 6월 → 201606).
9. ⑭ 행사가격란: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, 선물은 빈칸(EUREX연계거래는 행사가격 기재)으로 둡니다.
10. ⑮ 거래승수란: 국외파생상품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.
11. ⑯ 통화명란: 국외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통화명을 적습니다(예시: 미국달러 → USD, 유럽연합 → EUR).
12. ⑰ 거래일자란: 국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(예시: 체결일2016년3월11일, 결제일2016년3월12일 → 20160312).
13. ⑱ 매도/매수유형 및 ⑳ 약정가격란: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도/매수유형 코드 및 약정가격을 적습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선물</td><td>매도유형(코드)</td><td colspan="2">매도미결제약정 체결(11)</td><td colspan="2">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12)</td><td colspan="2">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13)</td></tr>
<tr><td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최종결제가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옵션</td><td>매도유형(코드)</td><td>매도미결제약정 체결(14)</td><td colspan="2">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15)</td><td>콜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16)</td><td colspan="2">풋옵션 매수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17)</td></tr>
<tr><td>약정가격</td><td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약정가격</td><td>Max[(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- 행사가격), 0]</td><td colspan="2">Max[(행사가격 -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), 0]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선물</td><td>매수유형(코드)</td><td colspan="2">매수미결제약정 체결(21)</td><td colspan="2">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22)</td><td colspan="2">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23)</td></tr>
<tr><td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최종결제가격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옵션</td><td>매수유형(코드)</td><td>매수미결제약정 체결(24)</td><td colspan="2">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(25)</td><td>콜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26)</td><td colspan="2">풋옵션 매도미결제약정의 만기도래(27)</td></tr>
<tr><td>약정가격</td><td>약정가격</td><td colspan="2">약정가격</td><td>Max[(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- 행사가격), 0]</td><td colspan="2">Max[(행사가격 -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), 0]</td></tr>
</table>

14. ㉑ 약정금액란: ⑲ 약정수량에 ⑳ 약정가격과 ⑮ 거래승수를 곱한 값에 결제일(선물은 반대거래 또는 만기도래 시 결제일)의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(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). 다만, 상기 매도/매수유형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, 약정금액은 매수·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,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.
15. ㉒ 수수료등란: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) 등 비용에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(FX마진의 경우 미결제약정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반영합니다)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.
16. 4분기 제출 시에는 (국외)파생상품거래명세서(금융투자업자 제출용-연간) [별지 제99호의3서식]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.